공 개

의안번호	제 247 호
의 결 연 월 일	2026. 5. 27. (제 10 차)

의결사항

금융감독원 예·결산심의 소위원회 위원 선임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5. 27.

1. 의결주문

「금융감독원 예·결산심의 소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예·결산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고자 「금융감독원 예·결산심의 소위원회」를 별도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 중.

「금융감독원 예·결산심의 소위원회」의 윤재원 위원이 2026.5.16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 선임안을 마련함.

※ 「금융감독원 예·결산심의 소위원회」는 금융위원회 內 소위원회로서 위원 선임시 금융위원회 의결 필요 (「금융위운영규칙」 §14 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붙　　임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45조(예산과 결산)

○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소위원회)

나. 2026년도 제10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5.21.) 심의필

<별 지>

금융감독원 예·결산심의 소위원회 위원 선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5조 제1항 및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에 따라 2026.5.27일자로 정수미(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를 금융감독원 예·결산심의 소위원회 및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며, 임기는 2028.5.26일까지로 한다.

【붙임】

관계 법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 략)
2.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3. (생 략)

제45조(예산과 결산) ①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 략)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선정하는 과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주관위원을 선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관련 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주관위원은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의안의 심의 등이 끝난 후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소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서는 제11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혁신기획재정담당관
연 락 처	02-2100-2782